

부천시평생학습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2년 11월 28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2년 11월 28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· 제101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(2002년12월11일) 상정

· 제103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(2003년3월17일)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이상훈)

□ 제안이유

-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평생학습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기반조성과 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한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,
- 누구나, 언제, 어디서나 평생학습을 제공함으로써 열린교육 사회를 통한 평생 학습공동체를 만들고자 평생학습협의회와 평생학습센터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평생교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평생학습협의회를 둠(안 제3조)
- 협의회는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과 기타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협의·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함(안 제4조)
-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함(안 제5조)

-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·운영함(안 제8조)
- 평생학습센터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,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, 시민과 평생학습 관련 단체의 연계망 구축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함(안 제10조)
- 평생학습센터는 필요시 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)
-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를 둠(안 제14조)
-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평생학습센터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, 평생학습 기관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망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사업으로 함(안 제15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| 질의 내용 | 답변 내용 |
|------------|---|
| ○ 조례실립목적은 | ○ 배움의 기회를 놓친 시민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을 진흥코자 함 |
| ○ 협의회의 기능은 | ○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결정을 하고, 평생학습도시로 가기 위한 시의 자문 기관 역할을 함 |
| ○ 설치규모는 | ○ 20명 정도임 |
| ○ 센터의 역할은 | ○ 평생학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소외계층의 평생학습진흥 등 전 시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코자 함임 |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음

나. 반대토론

- 조례자체가 평생교육법에서 제정하는 원래의 입법 취지대로 많은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지와 특히, 우리시에 있는 200여 평생학습기관과의 연계성을 총괄 검토후 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

5. 심사결과

- 수정의결

6. 수정안의 요지

- 별첨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부천시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65호 |
| 의결연월일 | 2003.3.19 (제103회) |

제안년월일 : 2003년 3월 ¹⁸17일

제안자 : 행정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평생교육에 대한 시책사항 협의 및 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회의를 연 2회 개최토록 하고,
- 조직원 구성시 연구원 이라는 명칭은 추상적으로 구성에 문제점이 있어 삭제하며, 소장과 직원의 자격기준을 분리하여 소장의 지위 향상 및 역할을 강화코자 함

2. 주요골자

- 정기회의를 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연2회 개최토록 수정(안 제7조)
- 조직원 구성은 연구원을 제외한 소장 및 직원으로 수정(안 제12조)
- 소장의 자격기준은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고, 직원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한자로 수정(안 제13조)

| 구분 | 내용 |
|----|---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 data-bbox="662 324 1436 526">○ 시민여론 조사시 대학교수등 지식 계층 보다 동의 새마을지도자등 지역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회단체장들의 실질적 의견수렴 (박병화 의원) <li data-bbox="662 593 1436 750">○ 의회홍보 영상물 제작 시사회 이전에 제작 콘티나, 스케치콘티, 스토리보드등을 작성 미리 검토 할 수 있도록 준비(박종국 의원) <li data-bbox="662 817 1436 918">○ 직원 워크샷 및 자체토론회 개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(위원장) <li data-bbox="662 985 1436 1131">○ 주요의정 핵심추진과제(17개사업)추진시 계획 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행 될 수 있 도록 추진 철저(위원장, 최해영의원) |

부천시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부천시평생학습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7조제1항중 "연1회"를 "연2회"로 한다.

제12조제1항중 "소장 및 연구원"을 "소장"으로 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자격기준)평생학습센터 소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 소장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이상 자격이 있는자
2. 직원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, 평생교육분야 3년이상 경력이 있는자

신·구 조문 대비표

| 제 정 안 | 수 정 안 |
|--|--|
| <p>제7조(회의) ①협의회 정기회의는 <u>연1회</u>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| <p>제7조(회의) ① ----- <u>연2회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③ (제정안과 같음)</p> |
| <p>제12조(조직원 구성 등) ①평생학습센터에는 <u>소장 및 연구원</u>, 직원을 포함 5명 이내를 둔다</p> <p>② (생략)</p> | <p>제12조(조직원 구성 등) ① ----- -- <u>소장</u>, ----- -----.</p> <p>② (제정안과 같음)</p> |
| <p>제13조(자격기준) <u>소장 및 연구원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, 직원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자, 평생교육분야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.</u></p> | <p>제13조(자격기준) <u>평생학습센터 소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소장은 <u>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이상 자격이 있는자</u> 2. 직원은 <u>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한자 또는 평생교육분야 3년이상 경력이 있는자</u> |

부천시평생학습조례안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부천시 (이하 "시"라 한다) 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부천시평생학습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천시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본원칙) ①시장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한다.
②시장은 시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강구한다.
③시장은 시의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·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.

제 2 장 부천시평생학습협의회

제3조 (평생학습협의회 설치) 평생교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부천시평생학습협의회(이하 "협의회" 라 한다) 를 둔다.

제4조 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
2. 기타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5조 (구성)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.

-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.
- ③위원은 교육장, 대학교 총(학)장,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, 상공회의소회장, 노동사무소장, 평생교육관련 단체장 등 각계 각층의 인사 중에서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.
- ④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6조 (위원장 등의 임무)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총괄한다.
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 (회의 등) ①협의회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.
 ②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③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 3 장 부천시평생학습센터

제8조(평생학습센터의 설치) ①평생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부천시평생학습센터(이하 "평생학습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 ②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제9조(사무소의 설치) 평생학습센터의 사무소는 부천시 원미구 상1동 394-2번지에 둔다.

제10조(기능)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2.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
3. 시민과 평생학습단체 및 평생학습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

4. 강사 관리 전문 은행제 운영
5. 지역인적자원개발과 민주시민의식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
6.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
7. 기타 평생학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11조(운영)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제12조(조직원 구성 등) ①평생학습센터에는 소장 및 연구원, 직원을 포함 5명이내을 둔다
②소장은 평생학습센터를 대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
제13조(자격기준) 소장 및 연구원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, 직원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, 평생교육분야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.

제14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위하여 부천시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은 평생학습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
④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, 당연직 위원은 시의원 1명, 교육업무담당 과장, 정보관리 업무담당 과장, 여성 및 사회복지업무담당 과장, 도서관 업무담당과장, 교육청 평생학습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평생학습에 학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자 및 평생교육 관련 기관장 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제15조(운영위원회의 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평생학습센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평생학습기관과의 프로그램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3. 평생학습기관과의 정보교류와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

제16조(회의 등) ①운영위원회는 상·하반기에 각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.

②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7조(임기)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18조(위원장 등의 임무) 위원장 등의 직무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9조(감독) ①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장은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소장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, 소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제2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